##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4. 2. 17(월)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 21.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1. 23.
라. 상 정 일 자 : 2014. 2. 12(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4 차 산업위원회)
$\bigcirc$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검토보고: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요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준조례와 상위 법령 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함．（안 제 36 조의 2 ）
○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재난지역 및 소방용수 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40조）
$\bigcirc$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 등 급수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2）
○ 법령 정비기준 및 표준조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 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급수공사 하자보증방법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신용카 드 납부 등 근거규정 신설하고 동파예방과 누수방지 등 급수시설의 보호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상 급수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 으로 상위 법령 등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임．

○ 다만，개정안 제 18 조제 2 항에서 급수공사 하자를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하여＂공사준공 후 1 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라고 종전 규정으로 정하였으나，「건설산업 기 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상•하수도와 관련한 공사별 책임기간이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기기설치 3 년，급배수 2 년으로 각각 명기되어 상위법과 상 이한 바，법령개정 이후부터 그 동안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하 여 하자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 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다루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다루 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향후 명확히 규명하여 별도 보고를 바람.

○ 안 제 11 조의 경우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란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
$\Rightarrow$ 기존의 수도계량기까지 관리 책임이 임의적으로 된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사항임.

## 5. 회의결과 - 수정가결

$\bigcirc$ 안 제 18 조 제 2 항 중 " 1 년 이내에"를 삭제하여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 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 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6.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허인환 - 이한구 - 윤재상 - 김영분 - 김정헌 - 안병배 - 조영홍의원

## 7. 심사결과

$O$ 수정가결(재석위원 7 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O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 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 부.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4. 신 - 구 조문 대비표 1 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뤄 일부개정조려안 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bigcirc$ 안 제 18 조 제 2 항 중 " 1 년 이내에"를 삭제하여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라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제 18 조（공사시행에 수반 한 책임） <br> （2）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1년 이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 으로 이를 보수 하여 야 한다． |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 한 책임） <br> （2） <br> 공사준공 후 1년 이내 －－－－－－－「건설산업 <br> 기본법」에 따라 시공 자부담 $\qquad$ | 제18조（공사시행에 수빈 한 책임） <br> （2） <br>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 설산업기본법」에 따 라－－－－－－－－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를＂「수도법」에 따라＂로，＂기 타＂를＂그 밖의＂로 한다．

제 11 조제 1 항 본문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제2항에 따른＂으로，＂한한다＂를＂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급수설비중＂을＂급수설비 중＂으로，＂시설물은＂을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로 한다．

제 18 조제 1 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공사준공 후 1년이내＂를＂공사준공 후＂로，＂시공자부담＂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제 2 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 2 중＂수도법＂을＂「수도법」＂으로 한다．

제 26 조제 1 항 중＂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를＂수도사용자등은 필 요한 경우＂로 하고，같은 조 제 2 항 본문 중＂ 6 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 을＂ 6 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으로，＂신청하되＂를＂신청하며＂로，＂의 하여＂를＂따라＂로 하며，같은 항 단서 중＂분양시＂를＂분양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당해＂를＂해당＂으로 하며，같은 항 제

1 호 중 " 3 월이상"을 " 3 개월 이상"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수처분후 3월이상"을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으 로 한다.

제 30 조제 1 항 본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개전시"를 "개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 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1 항에 따른"으로, "수도사용자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을 "수 도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 항 중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1 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2 개이상"를 " 2 개 이상"으로 하 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0조제6항 중 "직전3개월분"을 "직전 3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 중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 20 일 또는 말일"을 "말일"로, " 10 일전"을 " 10 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를 "경우에는 수 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한다.

제 3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
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40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의 1 ＂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같은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항 제 3 호 중＂기타 공익등＂ 을＂그 밖에 공익 등＂으로 하여 제5호로 하고，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제 41 조의 2 를 제 41 조의 3 으로 하며，제 4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1 조의 2 （급수설비의 보호）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5 위반내용란의 제1호 중＂급수내용＂을＂급수 도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 :---: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 |
| 법」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 |
| 여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 |
| 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
|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 |
|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 리）（1）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 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 （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 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 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 담한다．
（2）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 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 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 ------------------------- |
| （3）（생 략） | （3）（현행과 같음） |

제 18 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1）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 3 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호 1 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 여야 한다．
（3）．～（4）．（생 략）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 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수도 계량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수도 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유해화학반응 및

18 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1）－－－
$\qquad$
$\qquad$
$\qquad$
（2）－－－－－－－－－－－－공사준공 후－－－ －－－－－－－－－－－－－－－－－－－－－ㄷ건설산 얿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 －－－－－－－－－－－－－－－－－
（3）．～（4）．（현행과 같음）
（5）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 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법」－－－－－－－－

$\qquad$
$\qquad$


현 행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 일 전후 5 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5) 1 개소에서 2 개이상의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 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단서 신설>
(6)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 분의 1 을 감액한 요 금을 적용한다.
(77)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20 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
(4) 제 1 항에 따른
$\qquad$
$\qquad$
$\qquad$
-----.
(5) --------- 2개 이상
$\qquad$
$\qquad$ -------------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 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qquad$
------------- 직전 3 개 월분--
$\qquad$
 ------------
(7) 제6항에 따른
$\qquad$ --------------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1) ------
$\qquad$
------ 말일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10 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다만，급 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 수할 수 있다． <br> （2）（생 략） <br> （3）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br> ＜신 설＞ <br> 제 40 조（요금등의 감면）（1）시장은 다 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br> 1．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 | 10일 |
|  |  |
|  |  |
|  | 경우에는 수시로 |
|  |  |
|  | （2）（현행과 같음） |
|  |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  |  |
|  |  |
|  |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 |
|  | 부）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급 |
|  | 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 |
|  | 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직 |
|  | 불카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  | 납부할 수 있다． |
|  | 제 40 조（요금등의 감면）（1）－－－－－－－－－－－－－－－－ －－－－－ |
|  |  |
|  |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
|  |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



